

高麗後期の 異姓封君*

李 鎮 漢**

머리말

I. 『成化譜』의 異姓封君과 恭愍王 配享功臣의 職銜

II. 異姓封君의 資格과 그 待遇

III. 異姓封君과 本品官職

맺음말

요약

高麗後期에는 高位 官職을 지낸 후 封君號를 받는 인물이 많았지만, 封君의 성격이나 기능에 대한 정밀한 고찰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전기의 封爵制를 계승한 제도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異姓封君은 국가에 중대한 功勳을 세운 것에 대한 대가로서 하사되기도 하였고,

* 이 논문은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

(KRF-2004-07-AM0011).

이 글은 2006년 2월 고려사학회 워크숍의 『『成化譜』에 기재된 고려후기의 異姓封君과 封君制』라는 발표를 토대로 한 것인데, 토론을 해주신 채웅석 선생님의 자료에 대한 조언 덕분에 전면적인 내용의 수정을 가할 수 있었다.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 고려대 한국사학과 부교수

투고일 2007.11.14.

심사일 2007.11.29.

심사완료일 2007.12.11.

功勳과 無關하게 封君號를 주기도 하였다. 전자는 분명 관인의 지위를 나타내고 관직 제수의 근거가 되는 本品官職과는 구별되는 봉작의 성격이 있었다. 반면 후자는 공훈을 세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봉군호를 근거로 祿俸을 지급하고 官服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本品官職의 기능과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고려후기에는 봉군호만으로도 知貢舉, 春秋館職, 都監의 判事 등의 다양한 일을 수행하였고, 官人의 任命 기사에서도 官職과 封君을 용어상으로 다르게 표현하지 않았다. 또한 宰臣·樞密職과 함께 기록될 때는 가장 뒤에 있던 봉군호가 本品官職이 없이 봉군만 되었을 때는 검직 앞의 본품관직이 있던 곳에 적었다. 이것은 봉군과 관직이 서로 대체되는 관계임을 알려준다. 조선초에 국왕이 喪中인 權近에게 花山君만을 제수하면서 官職에 복무하라는 뜻으로 起復을 명하였던 것은 封君號를 현직 관인으로서 일을 하는 근거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후기의 異姓封君은 功勳의 여부, 本品官職의 유무에 따라 봉작이 되기도 하고, 본품관직처럼 기능하기도 하였으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高麗後期, 異姓封君, 封爵, 功勳, 本品官職

머리말

1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成化安東權氏世譜』(이하 『成化譜』)에는 고려시대에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인물들의 혼인 및 혈연관계나 관직에 대한 정보는 현재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와 같은 正史類 뿐만 아니라 기타 금석문이나 문집에서 찾을 수 없는 것도 적지 않아 이 시기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成化譜』에 기재된 고려 후기 인물의 관직들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守令職이나 文散階 등과 같은 예외도 있었지만 대체로 宰臣職・樞密職 등과 같이 관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本品官職이¹⁾ 가장 많았으며, 그것은 고려 후기의 관제가 문종대에 그것에 비해 크게 변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관직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었음을 밝혔다. 『成化譜』는 고려 후기 관제의 운영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관직을 類型化하고 그 성격을 파악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관직과 더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異姓封君에³⁾ 대한

1) 본품관직은 직무를 표현하면서도, 그것에 부여된 관품을 통해 일정한 지위를 나타내던 관직이며, 음서나 복식 등 지위에 따른 관인으로서의 특권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관직은 본품관직과 겸직을 모두 포함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본품관직이 없다’라는 것은 본품관직이 현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며, ‘봉군호만’이라는 것은 ‘본품관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본품관직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의 논문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이진한, 2004, 「고려시대 본품항두(本品行頭)」, 『역사와 현실』 54.

_____, 2007, 「高麗時代 本品行頭制의 運營과 變化」, 『韓國史學報』 26.

2) 李鎮漢, 2006, 「『成化譜』에 기재된 高麗後期の 官職」, 『韓國史學報』 22.

3) 고려전기의 봉작은 충선왕대 이후 봉군으로 바뀌었으나 1356년(공민왕 5)의 반원

정밀한 분석은 미루어 놓았다. 이와 관련된 가장 큰 의문은 왜 봉군호를 최종 관직처럼 기록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고려 후기 인물에 관한 기록에서 관직 없이 봉군호만 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찾을 수 있으나 이성봉군 자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成化譜』의 이성봉군 기재방식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봉군호만 기록하였던 공민왕 묘정 배향공신의 직함과 비교할 것이다. 이어 고려 후기의 봉군이 전기와 같이 봉작으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본품관직의 기능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前職 또는 散官인 채로 봉군호만을 제수받을 때와 현직과 함께 봉군호를 받을 때는 봉군호의 역할이 달라졌으며, 전자의 경우 본품관직을 대신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이 연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룬다면, 봉군호만으로 관인의 대우를 받고 지공거나 使命之任 등의 겸직을 하였던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혁의 일환으로 문종대의 관제를 회복하면서 다시 봉작으로 고쳤다가 1362년에 봉군으로 환원되었다(『高麗史』 권77, 百官志 2, 宗室諸君). 본고에서는 고려 후기 봉군을 고찰하였지만, 일시적으로 봉작으로 바뀌었던 시기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인데, 명칭의 변화는 있었으나 운영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봉군은 宗室封君과 異姓封君을 통칭하는 제도이지만 본고의 주된 관심사가 이성봉군에 있으므로 서술과정에서는 그것을 봉군이라고 약칭하겠다.

- 4) 고려 후기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여러 차례 봉군에 제수되고 있지만 아직 전문적인 연구는 없으며, 다음의 연구에서 일부 다루고 있어 참고가 된다.
崔貞煥, 1980, 「高麗 祿俸制의 變遷」, 『大丘史學』 18; 1991, 『高麗·朝鮮時代 祿俸制 研究』, 慶北大出版部.
崔貞煥, 1990, 「高麗後期 宰·樞臣의 祿科規定과 그 運營 實態」, 『韓國史研究』 69; 1991, 『高麗·朝鮮時代 祿俸制 研究』, 慶北大出版部.
金基德, 1998, 「封爵制의 變化와 封君制의 施行」, 『高麗時代 封爵制 研究』, 청년사.

I. 『成化譜』의 異姓封君과 恭愍王 配享功臣의 職銜

『成化譜』에서는 대체로 최종 관직 또는 최고 관직 하나만을 기재하였으며, 그것은 해당 인물이 어떤 지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관직과 구별되는 봉작의 성격을 가진 봉군호는 단독으로 기재되기도 하지만, 관직과 함께 적은 것도 많았다. 그렇다면 그 기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자.

A1. 權漢功 都僉議政丞·醴泉府院君.⁵⁾

2. 權漢功은 벼슬이 都僉議政丞·醴泉府院君에 이르렀고 일찍이 元의 명령으로 太子左贊善이 되었다.⁶⁾

B1. 權謙 贊成事·福安府院君.⁷⁾

2. 權謙 … 忠穆王이 왕위를 잇게 되어 동쪽으로 돌아오자, 권겸이 국새를 받들어 宮에 나아갔다. 贊成事に 제수되었으며, 곧 判三司事가 되었다. 恭愍王 初에 福安府院君으로서 원에 가서 딸을 皇太子에게 들였고 太府監太監에 제수되었다.⁸⁾

C1. 權廉 贊成事·玄福君.⁹⁾

2. 忠肅王이 그 딸을 들여 壽妃로 삼았고 그를 玄福君에 봉하였다. 뒤에 僉議贊成事に 배수되었으나 梁載와 틈이 있어 罷職되고 다시 玄福君에 봉해졌다가 졸하였다.¹⁰⁾

5) 『成化譜』 상, 12쪽.

6) 『高麗史』 권125, 權漢功傳.

7) 『成化譜』 상, 17쪽.

8) 『高麗史』 권131, 權謙傳.

9) 『成化譜』 상, 14쪽.

10) 『高麗史』 권107, 權坦傳附 廉.

3. 重大匡·玄福君 權公의 墓誌銘과 序 … 庚午年(1330)에 동쪽으로 돌아와 正順大夫·左常侍에 배수되었으며 뒤에 至元 乙亥年(1335) 玄福君에 봉해졌는데, 공이 雅量하여 公務 다스림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戊寅年(1338) 春三月에 毅陵이 이르기를 ‘玄福君은 가히 더불어 政事를 의논할 만하다’고 하였다. 이에 批를 내려 공을 匡靖大夫·僉議贊成事로 삼았다. 때에 燕南의 梁載가 임금의 총애를 얻었다. 공이 그의 사람됨을 비루하게 여겨 더불어 예를 나누지 않으니 양재가 심히 마음에 품고, 힘써 그 임명을 저지하였다. 그 다음해에 다시 玄福君에 봉해졌고, 1년이 지나 공은 병으로써 집에서 졸하였다.¹¹⁾

D1. 元顯 成安府院君.¹²⁾

2. … 恭愍王 때에 贊成事에 배수되었다. 원호는 원에서 張士誠의 반란을 토벌하는 장수를 우리 나라에서 모은다는 소식을 듣고, 피하기 위해 楊廣道都巡問使를 얻고자 하였다. 왕이 허락하지 않고, 成安府院君에 봉하여 보내었으며, 돌아와 判三司事에 배수되었다.¹³⁾

A1의 권한공은 『成化譜』에 都僉議政丞·醴泉府院君으로 기재되었으며, 『高麗史』 본인전에서는 그의 관직이 都僉議政丞·醴泉府院君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서로 일치한다.¹⁴⁾ B1의 權謙은 『成化譜』에 贊成事·福安府院君으로 기재되었다. 『高麗史』 本人傳에는 충목왕 때 찬성사에 배수되었다가 곧 판삼사사가 되었고, 공민왕 초에 福安府院君으로서 원에 가

11) 『權廉墓誌銘』, 511-512쪽.

※ 본고의 묘지명은 모두 金龍善編著, 2006, 『高麗墓誌銘集成』(第四版), 翰林大學 校아시아文化研究所에서 인용하였는데, 이후에는 편의상 「墓誌銘」과 쪽수만을 적겠다.

12) 『成化譜』 상, 17쪽.

13) 『高麗史』 권107, 元傳傳附 顯.

14) 『成化譜』에 실린 고려시대 안동 권씨와 그 사위의 관력에 대해서는 朴龍雲, 2005, 「安東權氏 사례를 통해 본 高麗社會의 一斷面—成化譜」를 참고로 하여-, 『歷史教育』 94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서 딸을 황태자에게 들인 뒤 태부감태감에 배수되었으며 뒤에 奇轍 등과 함께 주살되었다고 하였다. 권겸의 사례에서 본품관직과 봉군호를 함께 적은 것은 권한공의 기재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권겸의 열전에는 찬성사를 거친 뒤 판삼사사에 올랐으나 『成化譜』에는 찬성사를 최종관직으로 기록하였다. 고려전기에 재신의 例兼職이었던 판삼사사가 후기에는 단독직으로 변화하여 재신의 반열에 들고 권겸의 사례와 같이 판삼사사가 찬성사보다 높아지기도 하였다.¹⁵⁾ 『成化譜』의 찬자가 『高麗史』를 참고하였으나 판삼사사와 찬성사의 지위가 바뀐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 찬성사를 최고 관직으로 내세웠던 것 같다.¹⁶⁾

C1의 權廉은 『成化譜』에 贊成事·玄福君으로 기재되었지만, C2의 本人傳과 C3의 本人 墓誌銘에서는 현복군이라는 봉군호만 있는 상태에서 졸하였던 것 같다. D1의 元顯은 『成化譜』에 成安府院君으로 기재되고, D2의 本人傳에서는 찬성사와 判三司事 등의 재신직을 지낸 기록이 있다. 『成化譜』에서는 보통 한 인물의 최고 또는 최종 관직만을 기재하였으나 원호의 경우는 오히려 그것을 생략하였다.

A-C까지 인물의 관직 기재 방식을 보면, 관직과 봉군을 병기한 것과 봉군호만 기재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권한공과 권겸은

15) 判三司事의 서열이 首相과 亞相의 사이에 놓이게 되어 찬성사보다 높아졌고 삼사 좌사는 재신급이 되었다고 한다(邊太燮, 1975, 「高麗의 三司」, 『歷史教育』 17, 54-56쪽).

16)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成化譜』의 권씨들을 연구한 논문에서 충분히 밝혀졌지만(박용운, 「앞의 논문」), 봉군과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權迪—權適—은 『成化譜』에 贊成事·吉昌君으로 기록되었고(『成化譜』 상, 14쪽), 本人傳에는 일찍이 花山君이 되었다가 恭愍王 초에 吉昌君에 봉해지고 贊成事に 배수되었다고 하였으며, 공민왕이 시해된 뒤 주모자의 하나인 權瑄의 近親이라 하여 파직되었다고 한다(『高麗史』 권107, 權瑄傳附 適). 그리고 사위인 韓수의 묘지명에서는 그가 檢校門下侍中·吉昌府院君을 지냈다고 하였다. 최고 관직이 찬성사가 아닌 檢교문하시중이며, 봉군호도 吉昌君이 아닌 吉昌府院君으로 차이가 있다(『韓脩墓誌銘』, 613쪽).

실제로 본품관직과 봉군호를 동시에 제수받은 바가 있었다. 반면에 權廉은 현복군만 있는 상태에서 졸하였지만, 『成化譜』에서는 마치 찬성사와 현복군을 함께 제수받았던 것처럼 기재하였다. 찬성사는 비록 최종 관직은 아니었지만, 그가 역임한 최고 관직이어서, 봉군호와 함께 적었다고 판단된다. 봉군호도 명예로운 것이지만, 한 인물의 출세를 가늠하는 척도로는 역시 최고 지위를 적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본품관직을 더하여 병기하였다고 여겨진다.¹⁷⁾ 또한 이들 가운데 太子左贊善大夫, 太府監太監 등과 같은 원의 관직을 받은 인물도 있었으나 기재하지 않았다.¹⁸⁾

한편 元顯은 재신직을 지냈지만 봉군호만을 기록하였는데, 실제로 고려 후기 인물의 기록에서 본품관직 없이 봉군호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봉군호를 받으면서 현직에서 물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봉작은 영속성이 있어서 한번 봉해지면 큰 죄를 짓지 않는 한 해당 인물의 升黜에 관계없이 평생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으며, 이것은 봉군이 그 이전의 封爵과 달라졌음을 뜻한다. 다음의 공민왕 배향공신에 관한 기록은 그러한 차이를 알려준다.

E1. 仁宗室은 守太傅·中書令·樂浪侯 文烈公 金富軾과 守太尉·門下侍郎平章事 莊景公 崔思全이다.¹⁹⁾

17) 이것은 『成化譜』 찬자의 입장에서 봉군호를 반드시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廉悌臣과 같이 曲城伯에 봉해졌고(『高麗史』 권111, 廉悌臣傳), 우왕 8년 3월에 曲城府院君으로 졸하였다는(『高麗史節要』 권31, 우왕 8년 3월) 분명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成化譜』에는 정승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례도 있다.

18) 고려의 관직과 더불어 원의 관직을 함께 적은 사례도 적지 않으나 안동 권씨가 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그다지 자랑할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삭제했던 것 같다.

19) 『高麗史』 권60, 「禮志」 2, 吉禮大祀 禘祫功臣配享於庭.

- 2 恭愍王室은 政丞 正獻公 王煦, 雞林府院君 文忠公 李齊賢, 益城府院君 文忠公 李公遂, 夏城府院君 襄平公 曹益淸, 瑞寧君 文僖公 柳淑이다.²⁰⁾
- 3-1. 雞林府院大君이었으며 正獻의 시호를 받은 王公의 墓誌銘과 序.²¹⁾
- 2. 雞林府院君이었으며 文忠의 시호를 받은 李公의 墓誌銘.²²⁾
- 3. 元의 資善大夫·大常禮儀院使이고 高麗國의 推忠守義同德贊化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益山府院君이었으며 文忠의 시호를 받은 李公의 墓誌銘과 序.²³⁾
- 4. 元 高麗國의 忠勤節義贊化功臣·重大匡·瑞寧君이었으며 諡號는 文僖인 柳公의 墓誌銘과 序.²⁴⁾

E1에는 인종실의 배향공신인 金富軾과 崔思全의 직함이 기록되었다. 김부식은 수태부·문하시중으로 致仕하고, 의종 즉위년에 낙랑군개국후 식읍 1000호 식실봉 400호를 받았으며, 사후에 중서령에 추증되었다.²⁵⁾ 태묘에 祔祭된 그의 직함은 사후의 증직을 최종직으로 삼고 봉작호와 시호를 더한 것이었다. 최사전은 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に 이르러 63세의 나이로 引年致仕를 청하자, 인종이 開府儀同三司·守太尉·柱國을 더하였으며 사후에 莊景이란 시호를 받았다.²⁶⁾ 최사전도 최종관직에 시호를 더한 것이 배향공신의 직함으로 기록되었다.

두 사람을 비교하건대 김부식은 봉작호가 있었다는 차이가 있다. 배향공신의 직함은 개국공신을 제외하고 대체로 최종관직 및 시호만을 적었지만, 봉군호가 기재된 인물로 선종실의 文正—長淵縣開國伯—, 예종

20) 『高麗史』 권60, 「禮志」 2, 吉禮大祀 禘祫功臣配享於庭.
21) 「王煦墓誌銘」, 545쪽.
22) 「李齊賢墓誌銘」, 587-588쪽.
23) 「李公遂墓誌銘」, 570쪽.
24) 「柳淑墓誌銘」, 599쪽.
25) 『高麗史』 권98, 金富軾傳.
26) 『高麗史』 권98, 崔思全傳 및 「崔思全墓誌銘」, 70-71쪽.

실의 尹瓘—鈴平伯 등이²⁷⁾ 있었다. 현종실의 姜邯贊과 문종실의 李子淵 등은 봉작이 있었으나, 어떤 이유인지 기록되지 않았다. 어쨌든 원종대 이전 배향공신의 직함은 그 인물이 역임한 최고 또는 최종 관직을 적는 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문하시중, 평장사 등의 관직이 많았다.

반면 E2의 공민왕실에 배향된 인물의 직함 표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당 인물은 王煦·李齊賢·李公遂·曹益淸·柳淑 등이었으며, 왕후는 정승이라는 관직을 적었지만, 나머지 이제현·이공수·조익청·유숙은 오직 봉군호만이 있었다. 그런데 공민왕의 묘정에 배향공신을 부제하는 교서에 의하면 이제현·이공수·조익청의 직함은 『高麗史』 「禮志」의 기사와 같고, 王煦는 鷄林府院大君이었고, 柳淑은 瑞興君이었으므로²⁸⁾ 5명이 모두 봉군으로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²⁹⁾ 그것은 『成化譜』를 비롯한 관직 중심의 기록과 대비된다.

王煦,³⁰⁾ 李齊賢,³¹⁾ 李公遂,³²⁾ 曹益淸 등은 政丞,³³⁾ 柳淑은 贊成事³⁴⁾ 등의 고위 재신직을 지낸 바 있으나 그것을 제외하고 봉군호만을 기재한 까닭을 알려주는 것이 E3의 사료들이다. 이것들은 왕후·이제현·이공수·유숙 등의 묘지명 題名으로, 한결같이 재신직은 생략한 채 봉군호와 시호만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은 배향공신으로서 기록된 직함과

27) 『高麗史』 권60, 「禮志」 2, 吉禮大祀 禘祫功臣配享於庭.

28) 王若曰 … 鷄林府院大君 王煦 … 鷄林府院君 李齊賢 … 夏城府院君 曹益淸 … 益山府院君 李公遂 … 瑞興君 柳淑(『陽村集』 권 30, 教書類 「敬孝大王祔廟配享功臣教書」).

29) 30대 충정왕의 배향공신 2명도 모두 봉군호만이 있었다.

忠定王室 鐵城府院君 文貞公 李崱 興安府院君 文忠公 李仁復(『高麗史』 권60, 「禮志」 2, 吉禮大祀 禘祫功臣配享於庭).

30) 『高麗史』 권110, 王煦傳.

31) 『高麗史』 권110, 李齊賢傳.

32) 『高麗史節要』 권27, 공민왕 12년 4월.

33) 『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2년 11월.

34) 『高麗史』 권112, 柳淑傳.

거의 같다.

이들의 최종 관직을 검토하건대, 왕후는 첨의정승으로서 賀聖節使가 되어 원에 갔다가 도중에 졸하였는데, 일찍이 충선왕의 양자가 되고 충숙왕대에 鷄林府院大君에 봉해졌다.³⁵⁾ 그런데 부원대군의 지위가 정승보다 높고³⁶⁾ 더욱 영예로웠기 때문에 묘지명의 題名으로 삼았다고 생각된다. 이제현은 정승으로 치사한 뒤 계림부원군에 봉해져 있었고,³⁷⁾ 이공수도 領都僉議事를 지낸 뒤 익산부원군에 봉해져 있었으며,³⁸⁾ 유숙은 첨의찬성사에 이르렀으나 1365년(공민왕 14)에 辛旽이 집권한 뒤 瑞寧君에 봉해졌다가 영광에서 살해되었다.³⁹⁾ 조익청은 열전에 의하면 그가 반란을 일으킨 뒤 탄핵을 받았으나 왕은 좌정승으로 임명하고 夏城府院君에 봉하였다고 하며,⁴⁰⁾ 『高麗史節要』에서는 1353년 11월에 前左政丞으로 졸하였다고 하니,⁴¹⁾ 좌정승에서 면직된 뒤 하성부원군인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익청 · 이제현 · 이공수 · 유숙 등은 봉군호만 있는 채로 일생을 마감하여서 묘지명의 제명으로 삼았고, 왕후는 현직 정승이었지만 그보다 더 높은 부원대군의 봉해진 적이 있어서 그것을 표기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각종 특권이 본품관직에 주어지는 관제 운영 속에서 최고위 재신직을 지낸 인물들이 어떠한 이유로 봉군호만을 적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제현은 정승으로 치사하였으므로 그것을 밝힐 수도 있고, 다른 인물들도 영도첨의사, 찬성사를 前職으로 표기

35) 『高麗史』 권110, 王煦傳.

36) 충선왕 2년 교서에 의하면 종친으로 봉군된 자는 정승의 위치에 앉도록 하였으므로 정승보다 반열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高麗史』 권77, 「百官志」 2, 宗室諸君).

37) 『高麗史』 권110, 李齊賢傳 및 「李齊賢墓誌銘」, 589-590쪽.

38) 『高麗史』 권112, 李公遂傳 및 「李公遂墓誌銘」, 573쪽.

39) 『高麗史』 권112, 柳淑傳 및 「柳淑墓誌銘」, 602-603쪽.

40) 『高麗史』 권108, 曹益淸傳.

41) 『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 2년 11월.

하여 고위 관직을 지냈음을 나타내고 그에 따른 겸직과 함께 공신호 등을 함께 병기하면 墓誌銘 主人公의 명예를 더 높이는 일이 되었을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16세기에 만들어진 『成化譜』에서 실제 본품관직 및 봉군호를 별도로 제수받았다고 해도 함께 병기한 경우가 많았던 것은 최고 관직과 봉군호로써 그 인물의 훌륭함을 드러내려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전기와는 달리 후기에는 봉군호만 제수받은 사례가 많았으며, 그 상태로 일생을 마쳤을 때는 고위직은 생략한 채 봉군호만을 묘지명의 題名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官人에게 봉군호만을 독립적으로 제수하였던 것이 공훈에 대한 보상으로 주던 封爵과는 구별되는 점의 하나였다.

II. 異姓封君의 資格과 그 待遇

공민왕의 배향공신들 대부분이 봉군만을 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훈에 따른 봉작과는 성격이 다를 것이라는 추측을 하였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그러했던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본품관직과 함께 봉군호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기의 봉작제와 형식적으로나 기능상으로 다른 것은 전자의 경우이며, 후자는 거의 같았던 것이다. 고려후기의 봉군은 본품관직의 유무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였던 것인데, 그 차이를 확인하기 하기 위해 먼저 공훈에 대한 포상의 한 방식으로서 봉군되었던 사례를 검토해보겠다.

F1. 또 일찍이 본국에 行省을 세우려 하자 方臣祐가 壽元皇后에게 아뢰

어 드디어 그 일이 그쳤다. 이로써 忠肅王이 그를 후하게 대우하여 上洛府院君에 봉하고 推誠敦信亮節功臣號를 하사하였다.⁴²⁾

2. 裴佺은 興海郡 사람으로 어머니는 宮婢였다. 그는 忠惠王의 嬖幸으로 護軍이 되고 機務를 위임받았다. 여러 벼슬을 거쳐 軍簿判書가 되었으며 曹頤의 亂 때에 왕을 시종함에 勞苦가 있어 功을 기록하여 一等으로 삼고 興海君에 봉하였다.⁴³⁾
3. 崔濡는 知都僉議司로 옮겼다가 어떤 일로 罷職되었다. 忠定王을 받들어 원에 갔으며, 忠定왕이 즉위함에 미처 驚城君에 봉해지고 誠勤翊戴協贊保定功臣號를 하사받았다.⁴⁴⁾
4. (崔瑩의) 공을 논하여 侍中을 배수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굳게 사양하기를 “侍中이 되면 가벼이 외방에 나가기 어려우니 倭寇가 平定된 연후를 기다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鐵原府院君에 봉하였다.⁴⁵⁾

F1에서는 충숙왕대에 입성책동이 일어나자 방신우가 壽元皇后에게 아뢰어 중지시킨 바가 있으므로 왕이 上洛府院君에 봉하였다고 한다. F2에서는 宮婢의 아들인 裴佺이 曹頤의 난 때 忠惠王을 시종하여 1등공신에 기록되고 興海君에 봉해졌다고 하였다. F3의 崔濡는 忠定王을 받들어 원나라에 갔으며, 忠定왕이 즉위하게 되자 驚城君에 봉해졌다. F4에서는 관삼사사 최영이 왜구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공으로 우왕이 侍中에 제수하고자 하였으나 시중이 되면 가벼이 외방에 나갈 수 없다며 왜구가 평정된 후 그것을 제수받겠다는 최영의 뜻에 따라 鐵原府院君에 봉하였다고⁴⁶⁾ 하였다.

42) 『高麗史』 권122, 宦者 方臣祐傳.

43) 『高麗史』 권124, 裴佺傳.

44) 『高麗史』 권131, 崔濡傳.

45) 『高麗史』 권113, 崔瑩傳.

46) 『高麗史』 권113, 崔瑩傳.

정리하면 방신우는 立省策動을 저지한 공으로, 배전은 조적의 난 때 충혜왕을 시종한 공으로, 최유는 충정왕이 원에 갈 때 수행한 공으로, 최영은 왜구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공으로 각각 上洛府院君, 興海君, 鷲城君, 鐵原府院君 등에 봉해졌다. 모두 국왕이나 국가에 대한 중대한 공훈에 대한 대가로 봉군되었으며, 그것을 봉작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은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 G1. 官階는 升仕郎으로부터 三重大匡에 이르렀다. 館翰職은 知制誥로부터 大右文·監春秋館事に 이르렀다. 봉작[爵]은 永嘉府院君 推誠翊祚同德輔理功臣이었다. 또 일찍이 征東行省員外郎, 郎中, 王府斷事官이 되었었다. 벼슬하면서 한 번도 외직으로 나가거나 탄핵된 적이 없었다.⁴⁷⁾
2. 이에 관계는 重大匡에 이르렀고, 官職은 政堂文學·上護軍에 이르렀다. 館職은 進賢大提學에 이르렀다. 誠勤翊贊勁節功臣號를 받았고, 星山君은 爵이다. 文烈公은 시호이다.⁴⁸⁾

G1은 「權溥墓誌銘」의 끝부분으로 그가 고려 후기 最高位의 관직인 영도첨의를 지냈을 뿐 아니라 관계, 문한직, 원의 관직 등을 지냈다는 화려한 경력을 소개하면서 봉군호인 영가부원군을 爵이라고 하였다. G2의 「李兆年墓誌銘」에서도 전자와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誠勤翊贊勁節功臣號와 함께 星山君의 爵을 받았다고 하였다.

두 인물을 비교하건대 官職·官階·館職·功臣號와 더불어 봉군호 즉 封爵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었다. 대체로 이러한 것들이 당시 인물의 출세의 정도를 알려주는 것이었으며, 특히 봉군호는 공훈에 대한 봉작으로써 매우 영예로운 일이므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 가운데 하나였다. 봉

47) 「權溥墓誌銘」, 530쪽.

48) 「李兆年墓誌銘」, 521쪽.

군이 고려후기에 변화한 명칭이었지만 여전히 봉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공훈에 따른 보상이었다는 사실과 잘 어울린다.

그러나 공훈과 무관하게 제수되었던 경우가 적지 않아서 이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봉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자료는 봉군이 순수한 봉작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로, 고려후기 이성봉군의 특징을 규명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 H1. 아버지의諱는 方慶이다. 원에서 中奉大夫·管高麗軍都元帥에 宣授되었다. 推忠靖難定遠功臣·匡靖大夫·三重大匡·判都僉議司事·典理司事·上將軍·上洛郡開國公·食邑一千戶·食實封三百戶를 제수받았다. … 奉翊大夫·密直司副使·文翰學士를 배수받았고, 己亥年(1299)에 벼슬을 그만 둘 때임을 알고 물러나기를 청하였다. 翌年 8월에 아버지가 세상을 뜨니 遣囑에 따라 桑梓에 장사지내었다. 庚戌年(1310) 겨울에 아버지의 묘에서 제사를 지냈다. 壬子年(1312)에 重大匡·上洛君으로 기용되고 아버지의 茅土를 承襲하였다.⁴⁹⁾
2. 禹平章[禹禪]이 벼슬에 물러나[致事] 집에 있는 지 오래되었는데, 지난 겨울에 비로소 封君號를 얻었다. 나는 병 끝에 다시 政堂文學이 되어, 禹平章 택을 지나게 되자 시를 짓기를 ‘北崖 深處의 禹平章이 새로이 봉작—分茅—을 받아 임금의 은총을 입었는데, 내 하례가 너무 늦었다고 하지 마소, 나는 예전대로 조회하기 바쁘네’ 라고 하였다. 지금 半年이 지나 내가 또 致事하여 봉작의 명을 받지 못하니 우평장과 다르지 않다.⁵⁰⁾
3. 배 밭에서 취하여 꽃을 즐기며 읊으니. 諸公들에게 비로소音を 바로잡았다는 소리를 들었네, 늙은 목은은 한가로이 지내며 오직 食實만이니, 신맛과 단맛이 서로 섞인채 세월을 지내네.⁵¹⁾

49) 『金恂墓誌銘』, 441쪽.

50) 『牧隱詩藁』 권21, 「禹平章致事」.

H1의 「金恂墓誌銘」에서는 그의 아버지 金方慶이 원과 고려에서 받은 모든 관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312년(충선왕 4)에는 重大匡·上洛君에 기용되면서 金방경의 茅土를 승습하였다고 하였다. 모토는 食邑의 다른 표현이며, 그것을 승습하였다는 것은 金방경이 받았던 食邑과 食實封이 아니라 본관지인 안동의 별칭인 ‘上洛’이란 호칭을 이어받았다는 뜻이다. 이후 金순의 최종관직은 中대광·관삼사사·보문각대제학·상호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⁵²⁾ 상락군의 봉군호가 빠진 것을 보면 봉작이 평생 지속되지 않았던 듯하다.

H2는 『牧隱詩藁』의 내용이다.⁵³⁾ 禹禪가 벼슬에서 물러나 오랫동안 집에 있다가 지난 겨울에야 비로소 封君된 것을⁵⁴⁾ 分茅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分茅는 茅土의 분배 즉 分封과 같은 것으로 우평장이 봉군이 된 것을 나타낸다. 한편 식읍에 봉해졌다는[封食邑]거나⁵⁵⁾ 湯沐을 받았다는 것도⁵⁶⁾ 봉군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다.

H3은 이색이 배에 대한 느낌을 읊은 것인데, 늙은 牧隱이 한거하며 오직 ‘食實’만이 있으니 신맛과 단맛이 서로 섞인 듯이 세월을 보낸다고 하였다. 食實은 食實封을 줄인 것으로 봉군을 뜻하며, 현재 관직이 없이 지내는 것을 신맛에, 그래도 식실봉을 받는 것을 단맛에 비유하여 재신직

51) 『牧隱詩藁』 권9, 「園中雜詠」 梨.

52) 「金恂墓誌銘」, 440쪽.

53) 이 자료에 대한 번역은 임정기 옮김, 2002, 『국역 목은집』 6, 민족문화추진회, 36-37쪽을 참고하였다.

54) 李穡은 1361년(공민왕 10)을 비롯하여, 1362년, 1379년(우왕 5) 등 여러 차례 정당문학이 되었다(林龍雲, 2000, 「고려시대의 政堂文學」, 『고려시대 中書門下省 宰臣 연구』, 일지사, 365쪽). 한편 우씨 성을 가진 인물 가운데 우제는 1365년 3월에 첨의평리가 되었다는(『高麗史』 권41 「世家」) 것과 1363년에 전찬성사였다는(『高麗史』 권44, 「世家」) 기록이 나오므로 우평장은 우제이며, 봉군된 시기는 1379년 경으로 추정된다.

55) 『牧隱詩藁』 권28, 「哭姜政堂君輔」.

56) 『牧隱詩藁』 권21, 「禹平章致事」.

이 없이 봉군호만 있는 자기의 처지를 신맛과 단맛을 지닌 배의 맛에 빗대어 시로 읊은 것이다.

이상에서 상락군 김순이 아버지인 상락공을 承襲한 것, 봉군을 分茅·食邑·食實 등으로 표현한 것은 전기 봉작제에서 公·侯·伯·子·男 등의 작위와 더불어 식읍 또는 식실봉이 함께 봉해지던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이것은 봉군제가 전기의 봉작제에 그 연원이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그러나 같은 내용 속에서 봉작과 다른 봉군의 성격도 찾을 수 있다. 김순이 起復되면서 상락군이 되었던 것, 우평장이 벼슬에 물러나 있다가 봉군되었던 것, 이색 역시 한거하며 오직 봉군만이 있었다거나 정당 문학에서 물러나 봉작을 받고 있지 못한 초조함을 시로 쓴 것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재신직 등의 본품관직과 더불어 봉군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공훈을 세워서 봉군되지도 않았다.

이처럼 국가에 중대한 공훈을 세운 적이 없는 자에게 봉군을 주었다면, 그것은 봉작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민왕 묘정 배향 공신의 직함에서 보듯이 실제로 적지 않은 관인들이 봉군호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인 혜택까지 누렸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11. 恭讓王 2年 7月 都堂에서 啓하기를 “공이 없으면 封하지 않는 것이 옛 제도입니다. 요즘 功德의 있고없음과 官資의 높고낮음을 논하지 않고 封君된 자가 너무 많으니 바라건대 이제부터 큰 공을 세워 封君되었거나 贊成事 以上으로 封君된 자가 아니면 녹봉주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따랐다.⁵⁷⁾

2. (공양왕 2년) 12월에 趙浚이 상언하기를 “공이 없으면 侯가 되지 못하는 것이 我朝의 法입니다. 金富軾이 참람되어 반란을 일으킨 자

57) 『高麗史』 권80, 「食貨志」 3, 祿俸.

들을 없애고 西都를 평정한 뒤에야 樂浪侯에 봉해졌으며, 김방경은 耽羅를 정벌하고 東倭를 問罪하고서 上洛公에 봉해졌습니다. 지금 부터 宰相이나 安社定遠功臣이 아니면 封君이 되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⁵⁸⁾

11은 1390년 7월에 都堂에서 올린 啓의 내용으로, 큰 공을 세우지 않은 자와 찬성사 이상으로 봉군된 자가 아니면 녹봉을 지급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12는 1390년 12월 趙浚의 上言이다. 큰 공을 세우고 봉작된 김부식과 김방경의 예를 들면서 재상으로 安社·定遠功臣이 아니면 封君될 수 없도록 건의하였다.

두 기사에서 모두 공을 세우지 않은 자들에 대한 봉군을 금지하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11에서는 봉군의 폐단을 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큰 공을 세우거나 찬성사 이상으로 봉군된 자에게만 녹봉을 지급하자고 건의하였다. 이것은 그 이전에는 특별한 공을 세우지 않고도 봉군되어 녹봉을 받을 수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처럼 봉군록의 문제는 본품관직 없이 봉군호만 가진 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현직 재신·추밀로서 봉군된 자들에게는 재추직에 합당한 녹봉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와 달리 前職 官吏로서 봉군호만 있는 자는 관직이 없는 것이므로 녹봉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본래 녹봉은 관직에 복무하는 관인의 염치를 기르기 위한 것이어서 공훈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봉군에 대해 녹봉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공훈도 없이 봉군된 자들에게 녹봉을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都堂에서 주장한 것처럼 중대한 공훈을 세워 봉군된 자는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녹봉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책이 제시되었던 것은 공훈도 없

58) 『高麗史』 권75, 「選舉志」 3, 銓注 封贈之制 및 『高麗史』 권118, 趙浚傳.

이 봉군호를 받고 녹봉 등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근거는 이전에 만들어진 아래와 같은 규정들이었다.

11. 忠肅王 7年 8월에 下旨하기를 “異姓諸君도 顯官宰樞에서 제수하였다. 前者에 倉官이 그들에게 1科等を 낮추어 祿을 줄 것을 아뢰었으나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니 이제부터 顯官宰樞와 같은 科等으로 祿을 지급하라”고 하였다.⁵⁹⁾
2. (우왕) 13年 6월에 비로소 胡服을 혁파하고 大明의 制度에 따랐다. 1품에서 9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紗帽團領을 하고, 그 品帶는 차등이 있게 하였는데, 1품·重大匡 以上은 鈿花金帶를 하고, 2품·兩府 以上은 素金帶를 하고, 開城尹 및 3품·大司憲에서 常侍까지는 鈿花銀帶를 하고 判事에서 4품까지는 素銀帶를 한다 … 兩府前銜은 見任과 같고 兩府封君·前銜奉翊·通憲은 本品冠服을 하도록 하였다.⁶⁰⁾

J1에서는 1320년(충숙왕 7) 8월에 왕이 顯官宰樞에서 봉군된 자들의 녹봉을 1과등 낮추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같은 과등을 주도록 조치하였다. 이 명령에 의하면 현관재추에서 封君된 자들은 그 이전에 받았던 현관재추와 같은 녹봉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추의 관직 없이 봉군만 제수되는 사례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추직과 함께 봉군되었을 때는 재추직에 따라 녹봉이 지급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⁶¹⁾

59) 『高麗史』 권80, 「食貨志」 3, 祿俸.

60) 『高麗史』 권72, 「輿服志」, 冠服 冠服通制.

61) 河炫綱은 고려후기 封君이 전기의 封爵制에서 祿俸과 더불어 食邑을 별도로 받은 것과 같이 관직에 따른 녹봉 이외에 封君祿을 추가로 받았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河炫綱, 1965, 「高麗食邑考」, 『歷史學報』 26; 1988,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364-367쪽). 이어 김기덕도 같은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김기덕, 「앞의 논문」, 212쪽).

이 기사에서 倉官이 1科를 낮추자고 주장한 것은 봉군만 있는 자는 都評議使司의 구성원이 아니며, 재상으로서의 관직도 없으니 현직재추와 구별하여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반대로 녹봉을 똑같이 지급하자는 주장은 재추를 지내고 봉군된 자는 사실상 전직에 준하는 지위로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⁶²⁾ 녹봉액은 달라도 어느 경우이든지 현직이 없는 封君도 녹봉을 주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며, 그들이 녹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봉군호’였다.

J2는 1387년 6월에 정해진 明의 制度에 따른 冠服 규정이다.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紗帽·團領을 하고 品帶는 차등이 있었는데, 兩府前衛는 見任과 같으며 兩府封君과 前衛 奉翊·通憲은 本品의 冠服을 입는다고 하였다. 이 역시 現任·추밀 등 양부 관직을 띠고 봉군되어 있을 때는 양부에 준해서 복식이 정해지며, 봉군만이 있을 때는 전직을 참고하여 복식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服飾의 결정도 본품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封君의 祿俸額도 전직이 참고되었다. 이와 같이 본품에 따라 座次, 服飾, 祿俸 등 관인의 중요한 특권이 정해졌던 것은 관제 운영의 중심이 지위를 표현하는 본품관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게다가 봉군은 府院君과 君이 있어 상하위를 이루었지만, 그보다는 현직이 무엇인지, 그 이전에 어떤 관직을 지냈는지 등이 중요한 특권의 내용을 결정짓는 고려 사항이었다. 왜냐하면 같은 封君이라고 해도 3품에서 봉해진 경우도 있고, 현직 재신으로 봉해진 경우도 있어서 그들에 대해 똑같은 대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봉군호는 작위를, 관직은 특정 관서에서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62) 고려 후기 봉군록을 혁파하자는 건의가 여러 차례 제시되었으나 끝내 획기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몇 가지 폐단이 있었지만 일정하게 實效性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봉군과 녹봉과의 관계에 대해서 추후 상세히 고찰할 예정이다.

각각 구분되었다. 가령 재신으로서 봉군호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관직에 봉작이 더해진 것이므로 녹봉·복식·음서 등의 각종 특권의 기준은 본 품관직에 있게 된다. 하지만 고려후기에는 재신이나 추밀을 지낸 관인에게 관직 없이 봉군호만 제수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고, 그들에게도 그 전직에 준하는 녹봉을 주거나 복식을 하게 하는 등 현직과 거의 같은 특권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J1 기사를 정밀하게 해석하면 첨의찬성사와 같은 고위 관직을 지냈다고 해도, 새로운 관직은 물론 봉군호조차 받지 못한 자는 녹봉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뜻이 된다. 결국 前職 관인에 대한 녹봉의 지급 여부는 봉군호의 유무에 있었으며, 봉군호가 녹봉의 지급 근거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일반 관직에 대한 녹봉과 구별하여 봉군록을 두었으며, 이러한 봉군호는 작위로서의 성격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요컨대, 고려후기에도 전기와 같이 공훈을 세운 자에게 봉군한다는 원칙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공훈과 무관하게 봉군된 자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때의 봉군은 봉작으로서의 성격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재추를 지낸 경우에는 前職인 이들에게도 현직에 준하는 녹봉을 주었으며, 복식 등에서도 같은 대우를 하였다. 다만 재추를 지내도 봉군호가 없으면 그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으므로 봉군호의 제수여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Ⅲ. 異姓封君과 本品官職

고려후기의 封君은 그 이전 公·侯·伯·子·男의 작위를 수여하는 것에서 府院君·君號를 제수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⁶³⁾ 하지만, 본품관

직과 더불어 봉군호가 하사되었을 때 여전히 공훈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반면 前職 관인이 봉군호만으로 현직에 준하는 특권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현직이 아닌 관인이 봉군호를 제수받아 관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시기 봉군이 본품관직과 유사한 속성도 함께 지니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봉군은 국가에 일정한 공훈을 세운 자에게 해당자의 本貫 또는 혈족의 邑名을 더하여 특별히 봉하는 제도로서 한 번 봉해지면 일생동안 계속되고 심지어는 자손들에게까지 작위가 계승되어야 한다. 하지만 C1의 權廉 사례와 같이 관직, 봉군, 관직, 봉군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관직과 봉군이 서로 대체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므로 고려후기의 봉군은 기본적으로 功勳의 명분을 간직하고 그 범위 안에서 수여되었던 封爵과 달리 비록 無職事—때로는 문한직을 겸하기도 하면서—였지만 官僚體系에 포괄되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⁶⁴⁾ 고려후기의 봉군이 단순한 봉작제의 후신이 아니라는 지적은 옳다. 그럼 봉군호를 봉작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본품관직으로 이해할 때 더욱 잘 어울리는 사례들을 찾아보자.

- K1. 趙日新이 伏誅되자 公을 기용하여 右政丞을 삼았다. 癸巳年(1353) 正月에 辭職하였다. 5월에 府院君으로서 知貢擧가 되었다. 甲午年(1354) 12월에 다시 右政丞이 되었다.⁶⁵⁾
2. 王이 命하여 政丞 蔡河中 · 司空 姜好禮 · 政堂文學 鄭乙輔 · 同知密直司事 金上琦 · 薛玄固 · 密直提學 張沆 등을 국정에 叅議하게 하

63) 고려시대의 봉작제에 대해서는 金基德, 1998, 『高麗時代 封爵制 研究』, 청년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64) 金基德, 1998, 「封爵制의 變化와 封君制의 施行」 『高麗時代 封爵制 研究』, 청년사, 207쪽.

65) 「李齊賢墓誌銘」, 589쪽.

- 었다. 咸陽君 朴忠佐·陽川君 許伯 등을 判田民都監事로 삼았다.⁶⁶⁾
3. 曲城伯 廉悌臣을 西北面都元帥로 삼고, 刑部尙書 柳淵·判司宰寺事 金之順·上將軍 金元命을 副元帥로 삼고, 貂裘와 金帶를 하사하고 仍하여 斧鉞을 주어 보내었다.⁶⁷⁾
4. 崔有滄을 大寧君, 柳淸臣을 僉議政丞, 吳祜를 爲密直使, 李宏을 左代言, 中 用宣을 壽福君으로 삼았다.⁶⁸⁾

K1은 「李齊賢墓誌銘」으로 그는 1353년 5월에 府院君으로서 知貢擧가 되었으며 1354년 12월에 右政丞이 되었다. 전후 사정으로 보아 1354년 5월에 지공거로서 과거를 관장할 때 재신직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는 부원군으로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李仁復은 1365년에 興安府院君에 봉해졌다가 관삼사가 되었고 閏10월에 이색과 더불어 貢院에 있었는데, 봉군의 명이 내려져 尹紹宗 등 28인을 뽑았고, 1369년에는 동지공거 李穡과 함께 柳伯濡 등 33인을 뽑았다고 하였다.⁶⁹⁾ 이것은 1365년 윤10월에 興安府院君 李仁復이 知貢擧가 되고 簽書密直司事 李穡이 同知貢擧가 되어 尹紹宗 등 28인에게 급제를 주었고, 1369년 6월에는 興安伯 李仁復이 지공거가 되고 三司左使 李穡이 同知貢擧가 되어 柳伯濡 등 33인에게 及第를 주었다는⁷⁰⁾ 「選舉志」의 내용과 일치한다.

자료의 내용을 보건대, 이인복이 지공거가 되었을 때에는 興安府院君과 興安伯이라는 봉군호만이 있었다. 결국 그는 현직의 본품관직이 없었으나 봉군호와 더불어 재신을 역임한 관력을 인정받아 과거를 주관하였다. 그러므로 이제현·이인복을 지공거로 임명할 때 봉군이 중요한 자격

66) 『高麗史』 권37, 「世家」, 忠穆王 즉위년 閏2월 병인.

67) 『高麗史』 권39, 「世家」, 恭愍王 5년 9월 계미.

68) 『高麗史』 권34, 「世家」, 忠宣王 5년 3월 정유.

69) 「李仁復墓誌銘」, 586쪽.

70) 『高麗史』 권73, 「選舉志」 1, 科目 1 選場 공민왕 14년 윤10월 및 공민왕 18년 6월.

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K2에서는 충목왕 즉위년에 咸陽君 朴忠佐와 陽川君 許伯을 判田民都監事로 삼았다고 한다. K3에서는 1356년에 공민왕의 개혁정치로 원과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서북면을 방어하기 위한 관원을 임명하였는데, 曲城伯 廉悌臣이 西北面都元帥, 刑部尙書 柳淵·判司宰寺事 金之順·上將軍 金元命 등이 副元帥가 되었다. 재신을 지낸 염제신은 곡성백의 자격으로서 도원수가 되었고, 부원수들은 각각 형부상서, 판사재시사, 상장군 등의 관직으로서 임명되었다. 그리고 문하평리 文達漢을 楊廣道都察理使로, 知門下事 安慶을 都按撫使로, 保安君 朴壽年을 楊廣道都巡慰使로 삼았다는 것도⁷¹⁾ 같은 방식의 표기이다. 3인의 使命之任 가운데 文達漢과 安慶은 재신으로서 임명된 데 비해 박수년은 봉군으로서 되었으니, 봉군호가 使命之任의 근거가 되어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 다음해 염제신의 뒤를 이어 서북면도원수가 되었던 彦陽府院君 金敬直⁷²⁾ ‘以謀官 爲某職’ 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어떤 본품관직으로서 외직에 보임된다든지, 겸직을 제수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곡성백·언양부원군 등의 봉군호가 본품관직처럼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K4도 봉군호를 관직처럼 제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高麗史』 「世家」에 자주 보이는 관직 임명 기사의 하나로서 1313년 3월에 崔有滄을 大寧君, 柳淸臣을 僉議政丞, 吳祜를 密直使, 李宏을 左代言, 中 用宣을 壽福君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청신, 오기, 이평을 각각 첨의정승, 밀직사, 좌대언 등으로 삼았다는 것을 한자로 ‘爲’라고 적었다. 본래 최유엄과 중 用宣은 각각 대령군과 수북군에 임명하는 것이므로 ‘封’이라고 해야 했다. 그러나 관직과 봉군호를 모두 ‘爲’라고 하였으며, 특별히 관

71) 『高麗史』 권135, 우왕 9년 8월.

72) 『高麗史』 권39, 「世家」, 공민왕 6년 2월 임자.

직과 봉군을 구별하여 나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대령군 최유엄이 가장 앞서 기록된 것은 이미 첨의정승을 지낸 선임으로, 서열상 유청신에 앞서기 때문이다. 최유엄의 봉군호는 특별한 공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첨의정승을 마치고 별도의 관직을 제수하지 못한 대신에 제수된 것이어서 다른 인사 이동 기사와 함께 기록되었던 것이다.

K1-K3에서는 새로운 임명 대상에 봉군호만 있는 자가 있었고, 그들이 맡게 된 일은 知貢擧, 判田民都監事, 西北面都元帥 등이었다. 봉군이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으니 현직과 다를 바 없었다. 또한 지공거, 도감의 관사, 도원수 등은 재신들이 例兼해야 할 관직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비록 재신직이 없는 봉군이었다고 해도 재신급으로 인정되었음에 틀림없다. 이처럼 봉군호만을 가진 경우에도 그다지 큰 불편없이 재신들이 임명되는 관직들을 제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비록 봉작이었지만 실제로는 前職을 반영하여 재신급의 지위를 표현하는 본품관직처럼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K4에서는 관직과 봉군호가 같은 임명 기사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최유엄과 승려 用宣에게 봉군호를 제수하면서 ‘封’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 관직과 같이 ‘以爲’로 표현했다.

이와 같이 봉군이 관직의 역할을 하였던 것은 현직이 없고 봉군호만 있을 때였지만, 이제까지의 사료들에서는 그러한 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분명히 전직인 채로 봉군호만 있었던 인물을 통해 봉군과 본품관직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L1. 龜城君墓誌文 … 重大匡 · 前僉議贊成事 · 右文館大提學 · 監春秋館事 · 判摠部事 · 龜城君 吳祁 … 皇慶 3년(1314) 正月에 三司使 · 上護軍 · 商議都監事를 더하였다. … 延祐 6年(1319) 2월에 重大匡 · 龜城君을 더하였다. 7年(1320) 11월에 藝文館大提學 · 重大匡 · 僉議贊成事 · 知製教 · 知春秋館事 · 上護軍을 더하였다. 至治 元年(1321)

正月에 重大匡·僉議贊成事·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判摠部事·龜城君을 더하였다. 4월에 왕을 따라 원에 入朝하였고, 泰定 元年(1324) 2월에 大都에 있다가 연좌되어 면직되었다. 至順 元年 庚午年(1330) 七月에 還國하였고 至元 2年(1336) 8月 12日에 78세의 나이로 병으로 집에서 졸하였다. 뒤에 至元 2年 9月 日에 匡靖·前僉議政堂文學·右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 野齋樗軒 尹奕이 지었다.⁷³⁾

2. 大元 故將仕郎·遼陽路盖州判官 高麗國 三重大匡·興寧府院君·領藝文館事 諡文貞 安公 墓誌銘 … 甲申年(1344) 봄에 왕이 정사를 새로이 함에 먼저 재상을 논하니 副使密直로 소환되었고 곧이어 政堂文學으로 승진하였다. 다음해 僉議評理와 贊成事·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가 더해졌다. 丁亥年(1347) 봄에 병에 걸리자, 興寧君을 제수하였는데, 대개 집권한 자가 儒者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그해 겨울 衆論이 紛騰하여 이전과 같이 復職되었다. 戊子年(1348) 봄에 병이 다시 생겨 致仕를 청하였고 여름 6월초에 다시 興寧君에 제수되었다.⁷⁴⁾

L1은 吳潛—초명은 吳祁—의 墓誌銘이다. 그는 여러 관직을 거쳐 重大匡·僉議贊成事·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判摠部事·龜城君에 이르렀으나 면직된 뒤 졸하였고, 사후의 직함을 重大匡·前僉議贊成事·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判摠部事·龜城君이라고 하였으며, 묘지의 명칭은 「龜城君墓誌文」이라고 하였다. 결국 僉議贊成事·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判摠部事는 역임했던 최고 관직이었고, 龜城君만이 최종 직함인 셈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전직을 생략한 채 봉군호만 기록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직함으로서 내세울만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점은 묘지명을 지은 尹奕의 職銜이 匡靖·前僉議政堂文學·右文

73) 「吳潛墓誌銘」, 489-490쪽.

74) 「安軸墓誌銘」, 536-538쪽.

館大提學·知春秋館事였다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윤혁은 광정대부라는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직이어서, 묘지명을 지을 당시에는 散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잠의 최종관직과 묘지명을 찬술할 때 윤혁의 관직을 비교하건대, 두 사람 모두 현직 재신이 아니라는 점은 공통되지만 오잠은 봉군호가 있고, 윤혁은 그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오잠은 봉군록을 받고, 윤혁은 그것을 받을 수 없으므로 봉군호의 유무는 관인에게는 중요했던 것이다.

L2는 「安軸墓誌銘」이다. 그는 첨의평리와 찬성사 등을 역임하고 치사하였다가 흥녕군에 봉해진 후 추하였으며, 그 명칭을 「大元故將仕郎遼陽路盖州判官高麗國三重大匡興寧府院君領藝文館事諡文貞安公墓誌銘」이라고 하였다. 최종 관직에 재신직이나 추밀직은 없고, 본품관직이 들어가야 할 곳에 봉군호가 있으며, 그 다음에 領藝文館事가 있었다. 묘지명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처음에는 前贊成事로 봉군되었으며, 치사후 다시 봉군될 때는 사실상 특별한 직임이 없는 상태였지만 영예문관사는 그대로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재신직에서 면직되었으나 재신이 例兼하는 영예문관사를 겸하고 있다는 점과, 흥녕부원군을 삼중대광이라는 文散階와 領藝文館事라는 兼職 사이에 적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본품관직에 해당되는 재신직이 없는 상태에서 문한직을 겸한 사례로 이색이 있다. 그는 1379년 10월에 重大匡·政堂文學·右文館大提學·領藝文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上護軍을 제수받았고, 1381년 9월에 三重大匡·領藝文春秋館事·韓山君이 되었다.⁷⁵⁾ 양자를 비교하면 중대광에서 삼중대광으로 올라갔고, 한산군에 새로 봉해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색은 그의 시에서 자신의 처지를 ‘三重食邑領春秋’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는데⁷⁶⁾ 이는 삼중대광·한산군으로서 영춘추관사를 겸하고

75) 『牧隱集』, 「年譜」 洪武十二年 己未 十月, 洪武十四年 辛酉 九月.

76) 『牧隱詩藁』 권22, 「遣興」.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재신직이 없이 영춘추관사를 하게 된 것은 삼중대광·한산군이었기 때문이다. 이색의 연보와 시의 내용을 종합하건대 재신직이 아니라 봉군호로서 춘추관 등의 館職을 겸하였으며, 이 때는 전직 재신으로서 봉군호가 있다는 것이 겸직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관계·관직과 공신·봉군호를 나열하면서 봉군호의 위치가 바뀌는 것도 봉군호의 기능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보통 직함은 관계·본품관직·겸직·봉군호의 순으로 기재하지만, 安軸이 찬성사에서 면직되었을 때 홍녕부원군은 찬성사가 있던 곳에 적혀있다. 찬성사와 홍녕부원군이 치환되었던 것이다. 찬성사는 지위를 나타내는 관직인데, 엉뚱하게도 그 자리에 봉군호가 있었다.

관직과 봉군호가 서로 대체되는 것은 李穀의 관직과 봉군호의 제수과정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1346년(충목왕 2) 여름에 匡靖大夫·政堂文學·進賢館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을 제수받았다가 가을에 重大匡·韓山君·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가 되었다.⁷⁷⁾ 정당문학이 없어진 대신 한산군에 새로이 봉해진 것이고, 봉군호가 관직의 뒤가 아닌 바로 정당문학의 자리에 있다. 그가 정당문학으로서 진현관제학·지춘추관사를 겸하였으며, 정당문학에서 면직된 이후에도 문한직을 계속 겸할 수 있었던 것은 전직 재신으로 한산군에 봉해졌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1346년 가을의 직함에서는 정당문학이 빠진 바로 그 자리에 한산군이 들어갔는데, 이처럼 겸직의 앞에 봉군호를 적은 것은 관직의 가장 끝에 기록되는 것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봉군호는 봉작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관직으로서의 속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신직을 잃어도 겸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직 가운데에서도 본품관직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봉군호가 재신직이 있던 곳에 기

77) 『稼亭集』, 「年譜」 至正 6年 丙戌 夏, 秋.

록되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현직의 본품관직이 없고 봉군호만이 있을 때에 그것은 본품관직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다. 직함을 기록할 때 재신직이 있던 위치에 봉군호가 있던 것, 봉군호와 館翰職이 함께 제수되었던 것, 관직의 임명 기사에 봉군이 함께 있었던 것, 공이 있는 자들에게만 봉군을 하자는 것 등과 함께 봉군호만 있는 자에게 현직과 같은 수준의 녹봉을 주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봉군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봉군호만 있어도 본품관직처럼 기능하였다는 점은 어느 정도 설명된 것 같다. 끝으로 조선초에 모친상을 당한 권근의 起復을 둘러싼 권근과 국왕의 글을 통해 封君을 작위가 아니라 현직처럼 이해하던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해보겠다.

- M1. 草土의 臣 權近은 머리 조아려 箋을 올립니다. 신은 집안의 禍를 만나 慈母가 돌아가셨으니 몸이 衰經에 거하여 겨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聖恩을 입어 臣에게 資憲大夫·花山君·修文殿學士를 제수하였습니다. 또 聖恩을 입어 신에게 起復하라고 하셨습니다. … 발탁되어 爵位를 받고 관직에 나가게 하시니 恩寵의 우대가 실로 넘칩니다 … 앞드려 바라건대 主上 殿下께서는 큰 도량을 넓히시고, 아래로는 어리석은 자의 심정을 살피서 起復의 命을 되돌리고, 衰經의 制를 마치게 하여 孝治를 밝게 하시고 風俗을 장려하시면 다행일 것입니다.⁷⁸⁾
2. 사직의 일로 올린 箋의 일은 살피서 알았다. 아버이 상을 다하려는 것은 자식된 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 卿은 程朱의 학문과 子游·子夏와 같은 문장으로 中華에 명성을 떨쳤으며, 덕망은 東土에서 존중되어 가히 史筆을 잡을만하고 임금의 마음을 바로 잡을 만하다. 불행히 상을 만나 接見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禮樂을 만들매 情

78) 『陽村集』 권25, 「辭免起復花山君箋」.

文은 누가 지을 것이며, 事大交隣에 누가 辭命을 맡을 것인가? 이미 3개월이 지났으니 어찌 1년을 기다리겠는가. 그러므로 경을 本官으로 삼고 잉하여 起復을 명하는 것이다.⁷⁹⁾

M1은 권근이 어머니 상중일 때인 1399년에 화산군에 제수되고 기복의 명을 받자 辭免을 청하는 글이다.⁸⁰⁾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서 상복을 입은 지 겨우 석 달 만에 지나친 국왕의 은혜로 자헌대부·화산군·수문전학사를 제수하고 기복을 명해준 것에 대하여 감격스러우면서도 부끄럽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복의 명을 거두어 상제를 마치게 해줄 것을 청하고 있다. M2는 앞의 글에 대한 국왕의 비답이다.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들로서 당연하나, 권근은 예악을 제정할 때 문서를 만들고 사대교린의 辭命을 맡아야 하므로, 이제 석 달밖에 안되었으나 1년을 기다릴 수 없어 책명을 내려 본관을 삼고 기복을 명한다—策卿爲本官 仍命起復—고 하였다.

M1-2에서는 모친상을 당한 權近에게 자헌대부·화산군·수문전학사를 제수하고 기복한 것에 대해, 권근은 상례를 마쳐야겠다며 간절하게 사양하고 있으나, 국왕은 권근이 문한직에 꼭 필요하다며 그것을 윤허하지 않았다. 기복은 상을 당해 벼슬을 그만두었던 관인이 상례를 마친 뒤 다시 벼슬하는 것으로 대간의 서경을 거쳐 국왕의 명에 의해 이루어졌다.⁸¹⁾

79) 『陽村集』 권25, 「不允批答」 郎舍趙庸製.

80) 『陽村集』의 年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1398년 正月에 資憲大夫·花山君에 제배되었고, 왕비의 상을 알리기 위해 중국에 다녀왔다. 이듬해 3월에 原從功臣錄券을 하사받았으며 7월에 資憲大夫·花山君·修文殿學士를 제수받았으나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다. 이어 起復을 명받았지만 箋을 올려 상례를 마칠 것을 청하였는데 윤허하지 않는다는 批答이 있었다. 1400년(정종 2) 正月에 嘉靖大夫·簽書中樞院事·都評議使司事·修文殿學士에 제수되자 喪制를 마칠 것을 청하였지만 윤허되지 않았고 4월에 起復되었다(『陽村集』 「年譜」 洪武三十一年戊寅; 建文元年己卯; 建文二年庚辰). 따라서 「화산군으로 기복하는 것을 辭免해주기를 청하는 箋」은 1399년에 지어진 글로 추정된다.

당시 권근에게 官職은 수문전학사가 있었으며, 국왕도 그 일을 맡기기 위해 그가 취임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복은 봉군과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권근이 올린 箋文의 명칭이 「花山君으로 기복하는 것을 辭免 해주기를 청하는 箋」이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화산군을 면직받는 일이 중요했다. 왜냐하면 학사의 직은 순수한 겸직이어서 官階만으로 제수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헌대부·수문전학사와 같은 식의 관직 제수는 불가능하며, 학사직을 제수받을 근거가 되는 본품관직이 있거나, 이색의 경우와 같이 봉군호가 있어야 했다. 결국 권근은 화산군의 제수를 사직하려고 한 것이고, 국왕은 그것을 윤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복의 핵심은 화산군이었고 수문전학사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권근은 ‘俾起就職’이라고 표현하였고, 국왕은 ‘策卿爲本官 仍命起復’이라고 하였다. 만약 화산군이 순수한 봉작이었다면, 직무와 무관한 것이니 위와 같은 글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고려후기의 관인은 봉군호만으로도 사관직·한림원직·지공거 등과 더불어 使命之任, 도감의 관사에 임명될 수 있었으며, 관직의 임명 기사에서도 봉군호를 특별히 용어상 구별하지 않았다. 또한 본품관직과 함께 기록될 때에 가장 뒤에 있던 봉군호를 본품관직이 없이 봉군만 되었을 때에는 겸직 앞에 본품관직이 있던 곳에 적었다. 그리고 재신직과 봉군호를 반복해서 제수받는 것 등은 봉군호가 본품관직의 기능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로 인해서 조선초에 상을 당한 권근에게 재추의 관직 없이 화산군만을 제수하고 관직에 복무하라는 뜻으로 기복을 명하였던 것이다.

81) 朴龍雲, 1971, 「高麗朝의 臺諫制度」, 『歷史學報』 52; 1980, 『高麗時代 臺諫制度 研究』, 一志社, 80쪽.

맺음말

『成化譜』의 고려 인물 가운데 최종 관직과 봉군호를 별도로 받았으나 그것을 동시에 제수받은 것처럼 병기하였던 것은 해당 인물의 훌륭한 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후기에는 직함을 나타내는데 봉군호만이 있어도 충분했다는 것은 공민왕 묘정에 배향된 공신의 대부분이 봉군호를 직함으로 표기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고려후기에 중대한 공을 세운 자에게 본품관직과 함께 봉군호가 제수되었다. 이것은 봉군이 그 이전 封爵制 그 연원이 있었으며, 여전히 작위로서의 성격을 지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본품관직 없이 前職 또는 散官의 상태로 봉군되었던 인물들도 많았으며, 이들은 재신·추밀 등 본품관직이 아니라 봉군호를 근거로 정치·경제적 혜택을 누렸다. 이와 같이 특정한 관직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현직 관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 큰 공을 세우거나 찬성사 이상의 고위 관직을 지내고 봉군된 자에게만 녹봉을 주자는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쉽게 폐지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봉군제에 문제는 있었으나 관제 운영상 유용한 측면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다수의 관인들이 봉군되어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봉군으로서 지공거나 도감의 판사 등을 제수받아 활약하였으며, 봉군을 어떤 관직으로 삼았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 등은 봉군호가 본품관직과 닮은 점이 많았음을 알려준다. 이색 등의 年譜에서 본품관직과 봉군호가 있을 때는 가장 끝자리에 있던 봉군호가, 본품관직이 前職이 되면서 본품관직이 있던 위치로 옮겨 봉군호를 기록하였던 것도 봉군호가

본품관직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모친상을 당한 권근에게 국왕은 화산군을 제수하고 起復을 명하였는데, 당시 권근은 공을 세운 바가 없었으니 화산군은 공훈과 무관하다. 그렇지만, 그에게 기복하라고 명한 것은 현직으로 돌아오라는 뜻이므로 화산군으로서 관직에 종사하라는 것이 된다.

그 동안 고려후기의 이성봉군을 전기의 봉작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많아서, 이 시기 봉군만을 갖고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관인들의 실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들 가운데 국가에 공을 세운 자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새로운 본품관직을 받지 못한 채 봉군호만을 제수받았다. 또한 그들은 그것을 근거로 정치적 활동은 물론 겸직까지 하였으며, 前職에 준하는 녹봉을 받았다. 이것은 봉군이 본품관직을 대신하는 특별한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제추직을 그만두고 봉군호만 제수받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제추가 아니므로, 도당에 참여하여 국정에 대한 의논을 할 수 없어져 커다란 특권의 하나를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로 현직 관인과 거의 같은 대우를 받게 하였던 것이 고려후기 이성봉군의 특징이었다. 그렇지만, 이성봉군에 관해서 정작 궁금한 것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한 이유인데, 본고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여 그것을 규명하는데 소홀하였다. 따라서 차후의 논고에서는 이 제도가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하면서 고려말까지 지속되었던 운영상의 효용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자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稼亨集』 『牧隱集』 『牧隱詩藁』 『陽村集』

『成化安東權氏世譜』

金龍善編著, 2006, 『高麗墓誌銘集成』(第四版), 翰林大學校아시아文化研究所.

저서 및 논문

邊太燮, 1975, 「高麗의 三司」, 『歷史教育』 17.

河炫綱, 1965, 「高麗食邑考」, 『歷史學報』 26; 1988,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崔貞煥, 1980, 「高麗 祿俸制의 變遷」, 『大丘史學』 18; 1991, 『高麗·朝鮮時代 祿俸制 研究』, 慶北大出版部.

崔貞煥, 1990, 「高麗後期 宰·樞臣의 祿科規定과 그 運營 實態」, 『韓國史研究』 69; 1991, 『高麗·朝鮮時代 祿俸制 研究』, 慶北大出版部.

崔貞煥, 1991, 『高麗·朝鮮時代 祿俸制 研究』, 慶北大出版部.

金基德, 1998, 「封爵制의 變化와 封君制의 施行」, 『高麗時代 封爵制 研究』, 청년사.

金基德, 1998, 『高麗時代 封爵制 研究』, 청년사.

이진한, 2004, 「고려시대 본품항두(本品行頭)」, 『역사와 현실』 54.

朴龍雲, 2005, 「安東權氏 사례를 통해 본 高麗社會의 一斷面—‘成化譜’를 참고로 하여—」, 『歷史教育』 94.

李鎭漢, 2006, 「『成化譜』에 기재된 高麗後期の 官職」, 『韓國史學報』 22.

李鎭漢, 2007, 「高麗時代 本品行頭制의 運營과 變化」, 『韓國史學報』 26.

Abstract

Iseongbonggun (異姓封君) of the later Goryeo Period

Lee, Jin-Han

Many were conferred with the titles of nobility upon serving as high-ranking officials, but some people still vaguely think of such system as a succeeding system to the prior investment system of nobility from the early Goryeo without precisel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r functions of titles. However, Iseongbonggun of this period was granted to those as a compensation for their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country. On the one hand, the titles of nobility were given to others absent from any services. The former indeed signified the status of government positions and possessed.

Key Words : Later Goryeo period, Iseongbonggun(異姓封君), Merit, Investment system of nobility, Status of government position,

